

##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

(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즉시	
신고인	성명				
	주소		전화번호		
설치자	성명				
	주소		전화번호		
사업소	명칭				
	소재지				
제조소등의 구분			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		
설치허가연월일	년	월	일	설치허가번호	
제 호					
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					
선임된 안전 관리자	성명	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				
	직무상의 지위				
	자격의 종류				
	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		취급위험물의 유별		
	선임연월일		년	월	일
해임된 (퇴직한) 안전 관리자	성명		자격증 종류 및 번호		
	주소		해임(퇴직)연월일		
	해임(퇴직) 사유		년	월	일

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**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, 소방서장 귀하**

※ 첨부서류 : 제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

### 유의사항

1.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,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,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,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.
2.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,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3.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

제조소등의 구분	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설치장소 및 명칭

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

위험물 현황	유별	품명	수량	지정수량의 배수

제조소등의 구분	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설치장소 및 명칭

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

위험물 현황	유별	품명	수량	지정수량의 배수

제조소등의 구분	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설치장소 및 명칭

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

위험물 현황	유별	품명	수량	지정수량의 배수

제조소등의 구분	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설치장소 및 명칭

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

위험물 현황	유별	품명	수량	지정수량의 배수

제조소등의 구분	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설치장소 및 명칭

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

위험물 현황	유별	품명	수량	지정수량의 배수

<p>신청인 제출서류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(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)</li> <li>2.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(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)</li> <li>3.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「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)</li> <li>4.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(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)</li> </ol>	<p>수수료 없음</p>
<p>담당 공무원 확인사항</p>	<p>국가기술자격증(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)</p>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(사본 1부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